

제5부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개정 2012. 3.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 3에 따라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선거기사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
2.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의 형평성
3. 사실에 기초한 객관성
4. 정치적 중립

제3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선거기사를 심의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해당 매체의 발행부수, 발행주기, 배포범위 등에 따른 영향력
3. 선거기사의 게재시기
4. 심의기준에 대한 언론사의 반복 위반 여부

제2장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 보도하여야 한다.

제5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며, 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취재를 통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그대로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해 예측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을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용보도 및 인터뷰기사)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포함한 개인이나 정당을 포함한 단체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할 때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③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여론조사 보도)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언론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설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전제 여건 및 결과와 다른 해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보도) ①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보도할 때는 후보자나 정당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언론사는 제1항의 비교평가결과 보도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제12조(기고 등) ①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개인 또는 언론사 내부필진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삭제>

제13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상업광고의 제한) ① 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진게재) ① 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권리구제

제17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결 정

제19조(제재결정 등) ①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론보도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에 대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반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결정문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5. 주의사실 게재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6. 경고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의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12년 3월 5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따라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선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각종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 ②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할 경우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피추천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사람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에 따라 그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요구

제12조(심의안건) 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등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간행물등 제출 요구)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정기간행물등의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후보자가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한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가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또는 주의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요구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서면,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제15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시정요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①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인(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및 관련 당사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반론보도청구

제19조(반론보도청구회부) ①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

의 양측 당사자 등에게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팩시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반론보도청구회부의 결정 및 통보)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반론보도청구회부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조정중재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3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첨부 : 본인승낙서 1부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대표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승낙서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직 업	
	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위 본인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 ○ ○ (인)

언론중재위원회 귀중

주 : 학력 및 경력은 주요사항 2~3개 정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반론보도청구회부서		처리시간
			48시간
청 구 인	①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 주 소 (e-mail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⑦ 성명(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⑧ 주 소
	⑨ 대표자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소 재 지		⑫ 전 화 번 호
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	⑬ 언 론 사 명 (매 체 명)		
	⑭ 보도일자 및 지면		
	⑮ 보 도 내 용		
<p>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반론보도청구회부인 : (인)</p> <p>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귀중</p>			
<p>구비서류: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p>			<p>수 수 료</p> <hr/> <p>없 음</p>

[시행 2012.3.15] [법률 제11116호, 2011.12.2, 타법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

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

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중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와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⑧~⑨ (생략)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명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

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

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⑦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의를대상매체 현황

※ 일간지 132개(중앙일간지 31, 지역일간지 101), 주간지 253개(종합주간지 32, 지역주간지 220, 특수주간지 1), 월간지 25개, 뉴스통신 3개 : 총 413개(2012년 3월 15일 기준)

1) 일간지 132개

구 분	매 체 명	
중 앙 일 간 (31)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일간스포츠 - 농민신문 -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이브닝, City(시티), 스포츠한국	
지 역 일 간 (101)	서울(12)	내외일보, 새한일보(구 대한매일신문) 서울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경향매일, 이투데이, 환경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4)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대구(6)	대구신문, 대구연합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경일보
	경북(4)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안일보
	인천(3)	경도신문, 인천신문, 인천일보
	경기(16)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수원일보, 오늘신문, 일간경기
	광주(15)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광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즈, 남도매일, 전남도민일보, 주간호남일보, 희망일보(구 일간호남)

구 분	매 체 명	
지 역 일 간 (101)	대전(8)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대전투데이
	충북(6)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전북(6)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일보,
	전북(4)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북매일신문, 일간전북타임스
	경남(9)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창원일보, 일간뉴스경남, 한남일보

2) 주간지 : 252개

구 분	매 체 명	
종 합 주 간 (32)	<p>뉴스스아이즈, 뉴스위크한국판, 대한뉴스, 매경ECONOMY, 미래한국, 시사IN(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씨앤비(CNB)저널, 주간경향,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믹리뷰,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동아비즈니스 리뷰, 뉴스포스트, 미디어워치, 민주신문, 사건의 내막, 시민사회신문, 시사서울, 월드경제,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 토요경제, 주간한국</p>	
지 역 주 간 (220)	서울(39)	<p>강남내일신문, 강남저널,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노원신문, 뉴스in, 동북일보,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북신문, 양천투데이, 영등포신문, 위클리온서울, 은평시민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시정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연합신문</p> <p>강릉신문, 강원고성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p>
	강원(11)	강원영동네트워크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홍천신문
	부산(1)	부산여성뉴스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제주(2)	서귀포신문, 제주프레스

구 분	매 체 명	
지 역 주 간 (220)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경북(26)	(영천)시민신문,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새영남신문, (주간)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예천신문, 울진21, 울진신문,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광주, 전남(25)	시민의소리,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남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저널, 주간강진신문, 주간나주신문, 주간순천신문, 주간영광신문, 주간완도신문, 주간장흥신문, 주간함평신문, 주간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대전, 충남(12)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온양신문, 청양신문, 충남시사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놀미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충북(12)	영동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삼군신문
	경기(32)	고양신문, 과천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광명일보, 군포신문, 김포신문, 남양주신문, 뉴스리더, 동부교차로저널,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타운, 세종신문, 시흥신문, 아이디분당, 안산정론신문, 안성신문, 안양광역신문, 양주신문, 여주신문, 오산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주간현대, 파주저널,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하남신문, 남동신문, 부평신문
	전북(21)	고창코리아, 고창신문,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주간군산신문, 주간김제신문, 주간소통신문, 전북신문고, 정읍뉴스, 익산투데이, 해피데이고창
	경남(34)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거창중앙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신문, 김해뉴스, 남해시대, 남해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신문,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 창원신문, 창녕신문, 하동신문, 한려투데이, 함안뉴스,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함안정통신문, 함양신문, 황강신문, The 함안신문, 경남여성신문

※ 특수주간(1) : 대한변협신문

3) 월간지 : 25개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12)	경제풍월, 뉴스저널, 서울21, 시사매거진,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이코노미플러스, 포브스코리아, 포춘코리아, 폴리피플, 한국논단
여성지(6)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주부생활
지역월간(7)	피플파워(경남), 굿뉴스피플(광주), 전라도닷컴(광주), 시사전북(광주), 김포뉴스(경기), 전국지방시대(경기), 고흥타임즈(광주)

4) 뉴스통신 : 3개

뉴시스, 연합뉴스, KNS뉴스통신

5

색인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정 유형	의결 번호	언론사명	면 수
자 체 심 의	사과문 게재	2012국선80	CNB저널	64
	사과문 게재	2012국선89	거창신보	71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3	충청신문	78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4	충청리뷰	84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16	경도신문	93
	경 고	2012국선66	수도권일보	96
	경 고	2012국선67	월요신문	98
	경 고	2012국선71	CNB저널	102
	경 고	2012국선88	종로저널	107
	경 고	2012국선90	삼군신문	112
	경 고	2012국선105	문화일보	115
	경 고	2012국선106	동아일보	117
	경 고	2012국선107	서울신문	119
	경 고	2012국선108	조선일보	121
	경 고	2012국선112	남도일보	122
	경 고	2012국선132	상주신문	124
	주 의	2012국선1	영남일보	127
	주 의	2012국선3	경기매일	131
	주 의	2012국선6	울산매일	133
	주 의	2012국선12	충청일보	138
	주 의	2012국선13	보은신문	140
	주 의	2012국선15	우리일보	142
	주 의	2012국선17	CNB저널	144
	주 의	2012국선18	강원리뷰	149
	주 의	2012국선19	완해진신문	152
	주 의	2012국선27	대구일보	154
	주 의	2012국선28	완주신문	157
	주 의	2012국선29	전라일보	160
	주 의	2012국선30	우먼센스	162
	주 의	2012국선33	내외일보	167
	주 의	2012국선34	전광일보	169
	주 의	2012국선35	폴리피플	171
	주 의	2012국선36	'인천일보/경기인천일보	178
	주 의	2012국선38	시민사회신문	180
주 의	2012국선39	아시아투데이	181	
주 의	2012국선40	함평신문	182	
주 의	2012국선44	충청타임즈	184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주 의	2012국선45	중부일보	187
	주 의	2012국선46	송파신문	189
	주 의	2012국선47	일요시사	191
	주 의	2012국선50	경인매일	194
	주 의	2012국선57	동아일보	196
	주 의	2012국선58	서울경제	198
	주 의	2012국선59	조선일보	200
	주 의	2012국선60	김포신문	202
	주 의	2012국선64	동작신문	203
	주 의	2012국선65	일요신문	205
	주 의	2012국선69	충북뉴스	208
	주 의	2012국선70	한겨레	210
	주 의	2012국선72	일요시사	212
	주 의	2012국선73	파주저널	214
	주 의	2012국선76	중앙일보	216
	주 의	2012국선77	동양일보	218
	주 의	2012국선78	충청리뷰	220
	주 의	2012국선81	일요서울	222
	주 의	2012국선86	새전북신문	224
	주 의	2012국선91	광주일보	226
	주 의	2012국선93	경북자치신문	229
	주 의	2012국선94	김천신문	231
	주 의	2012국선95	대한변협신문	232
	주 의	2012국선101	경향신문	234
	주 의	2012국선102	한겨레	236
	주 의	2012국선104	반월신문	240
	주 의	2012국선109	경남여성신문	242
	주 의	2012국선110	경기일보	244
	주 의	2012국선114	울진신문	246
	주 의	2012국선115	월요신문	248
	주 의	2012국선120	매일신문	250
	주 의	2012국선121	대경일보	252
	주 의	2012국선122	경향신문	254
	주 의	2012국선123	미디어워치	257
	주 의	2012국선125	한겨레	260
	주 의	2012국선126	여성조선	262
	주 의	2012국선133	시대일보	268
	권 고	2012국선2	송파신문	271
	권 고	2012국선7	충청일보	272
	권 고	2012국선8	서울일보	273
	권 고	2012국선9	전라일보	274
	권 고	2012국선10	전북중앙신문	275
권 고	2012국선11	전북일보	276	
권 고	2012국선14	경북도민일보	277	
권 고	2012국선20	서울경제	279	
권 고	2012국선21	전라일보	280	
권 고	2012국선22	호남신문	283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자 체 심 의	권 고	2012국선23	충청신문	285
	권 고	2012국선24	새전북신문	287
	권 고	2012국선31	아주경제	289
	권 고	2012국선32	충북일보	291
	권 고	2012국선37	뉴스포스트	293
	권 고	2012국선48	주간한국	295
	권 고	2012국선49	무등일보	297
	권 고	2012국선51	인천신문	300
	권 고	2012국선52	남도일보	301
	권 고	2012국선53	광남일보	309
	권 고	2012국선54	매일신문	311
	권 고	2012국선55	대구연합일보	313
	권 고	2012국선56	공주신문	315
	권 고	2012국선68	주간한국	317
	권 고	2012국선79	경기일보	320
	권 고	2012국선82	무등일보	322
	권 고	2012국선83	전남일보	324
	권 고	2012국선84	서울경제	326
	권 고	2012국선85	광주매일신문	328
	권 고	2012국선87	경향신문	330
권 고	2012국선92	울산신문	332	
권 고	2012국선103	홍성신문	334	
권 고	2012국선111	광주매일신문	336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수
시정요구심의	사과문 게재	2012국선75	성윤환 / 상주고향신문	337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6	차영 / 양천신문	341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8	최인기 / 나주신문	346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2	소기숙 / 중부일보	352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3	김종태 / 상산신문	355
	반론보도문 게재	2012국선26	조용균 / 서울신문	359
	경 고	2012국선96	이학영 / 경기헤럴드	362
	경 고	2012국선117	강석진 / 거창신문	365
	경 고	2012국선119	박요찬 / 과천저널	368
	기 각	2012국선25	허동준 / 중앙일보	371
	기 각	2012국선98	서미경 / 동아일보	373
	기 각	2012국선99	서미경 / 서울신문	375
	기 각	2012국선118	강석진 / 거창군민신문	377
	기 각	2012국선127	권선택 / 중도일보	379
	각 하	2012국선5	박석삼 / 모든 언론사	382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	이한성 / 경북매일신문	383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1	정선진 / 자치안성신문	385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2	이종걸 / 동아일보	387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3	곽진업 / 헤럴드경제	390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97	원혜영 / 부천21	392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100	서미경 / 뉴시스	394

2) 언론사 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 체 심 의	CNB저널	주 의	2012국선17	144
		경고	2012국선71	102
		사과문 게재	2012국선80	64
	강원리뷰	주 의	2012국선18	149
	거창신보	사과문게재	2012국선89	67
	경기매일	주 의	2012국선3	131
	경기일보	권 고	2012국선79	320
		주 의	2012국선110	244
	경남여성신문	주 의	2012국선109	242
	경도신문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16	93
	경북도민일보	권 고	2012국선14	277
	경북자치신문	주 의	2012국선93	229
	경인매일	주 의	2012국선50	194
	경향신문	권 고	2012국선87	330
		주 의	2012국선101	234
		주 의	2012국선122	254
	공주신문	권 고	2012국선56	315
	광남일보	권 고	2012국선53	309
	광주매일신문	권 고	2012국선85	328
		권 고	2012국선111	336
	광주일보	주 의	2012국선91	226
	김천신문	주 의	2012국선94	231
	김포신문	주 의	2012국선60	202
	남도일보	권 고	2012국선52	301
		경 고	2012국선112	122
	내외일보	주 의	2012국선33	167
	뉴스포스트	권 고	2012국선37	293
	대경일보	주 의	2012국선121	252
	대구연합일보	권 고	2012국선55	313
	대구일보	주 의	2012국선27	154
	대한변협신문	주 의	2012국선95	232
	동아일보	주 의	2012국선57	196
		경 고	2012국선106	117
	동양일보	주 의	2012국선77	218
	동작신문	주 의	2012국선64	203
	매일신문	권 고	2012국선54	311
		주 의	2012국선120	250
	무등일보	권 고	2012국선49	297
		권 고	2012국선82	322
	문화일보	경 고	2012국선105	115
미디어워치	주 의	2012국선123	257	
반월신문	주 의	2012국선104	240	
보은신문	주 의	2012국선13	140	
삼군신문	경 고	2012국선90	112	
상주신문	경 고	2012국선132	124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 체 심 의	새전북신문	권 고	2012국선24	287
		주 의	2012국선86	224
	서울경제	권 고	2012국선20	279
		주 의	2012국선58	198
		권 고	2012국선84	326
	서울신문	경 고	2012국선107	119
	서울일보	권 고	2012국선8	273
	송파신문	권 고	2012국선2	271
		주 의	2012국선46	189
	수도권일보	경 고	2012국선66	96
	시대일보	주 의	2012국선133	268
	시민사회신문	주 의	2012국선38	180
	아시아투데이	주 의	2012국선39	181
	아주경제	권 고	2012국선31	289
	여성조선	주 의	2012국선126	262
	영남일보	주 의	2012국선1	127
	완주신문	주 의	2012국선28	157
	완해진신문	주 의	2012국선19	152
	우리일보	주 의	2012국선15	142
	우먼센스	주 의	2012국선30	162
	울산매일	주 의	2012국선6	133
	울산신문	권 고	2012국선92	332
	울진신문	주 의	2012국선114	246
	월요신문	경 고	2012국선67	98
		주 의	2012국선115	248
	인천신문	권 고	2012국선51	300
	인천일보/경기인천일보	주 의	2012국선36	178
	일요서울	주 의	2012국선81	222
		주 의	2012국선47	191
	일요시사	주 의	2012국선72	212
		주 의	2012국선65	205
	일요신문	주 의	2012국선65	205
	전광일보	주 의	2012국선34	169
	전남일보	권 고	2012국선83	324
	전라일보	권 고	2012국선9	274
		권 고	2012국선21	280
		주 의	2012국선29	160
	전북일보	권 고	2012국선11	276
	전북중앙신문	권 고	2012국선10	275
	조선일보	주 의	2012국선59	200
경 고		2012국선108	121	
종로저널	경 고	2012국선88	107	
주간한국	권 고	2012국선48	295	
	권 고	2012국선68	317	
중부일보	주 의	2012국선45	187	
중앙일보	주 의	2012국선76	216	
충북뉴스	주 의	2012국선69	208	
충북일보	권 고	2012국선32	291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자 체 심 의	충청리뷰	주 의	2012국선78	220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4	84
	충청신문	권 고	2012국선23	285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3	78
	충청일보	권 고	2012국선7	272
		주 의	2012국선12	138
	충청타임즈	주 의	2012국선44	184
	파주저널	주 의	2012국선73	214
	폴리피플	주 의	2012국선35	171
	한겨레	주 의	2012국선70	210
		주 의	2012국선102	236
		주 의	2012국선125	260
	함평신문	주 의	2012국선40	182
	호남신문	권 고	2012국선22	283
홍성신문	권 고	2012국선103	334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면 수
시 정 요 구 심 의	거창군민신문 / 강석진	기 각	2012국선118	377
	거창신문 / 강석진	경 고	2012국선117	365
	경기헤럴드 / 이학영	경 고	2012국선96	362
	경북매일신문 / 이한성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	383
	과천저널 / 박요찬	경 고	2012국선119	368
	나주신문 / 최인기	사과문 게재	2012국선128	346
	뉴스스 / 서미경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100	394
	동아일보 / 서미경	기 각	2012국선98	373
	동아일보 / 이종걸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2	387
	부천21 / 원혜영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97	392
	상산신문 / 김종태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3	355
	상주고향신문 / 성윤환	사과문 게재	2012국선75	337
	서울신문 / 조용균	반론보도문 게재	2012국선26	359
	서울신문 / 서미경	기 각	2012국선99	375
	양천신문 / 차영	사과문 게재	2012국선116	341
	자치안성신문 / 정선진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41	385
	중도일보 / 권선택	기 각	2012국선127	379
	중부일보 / 소기숙	정정보도문 게재	2012국선42	352
	중앙일보 / 허동준	기 각	2012국선25	371
	헤럴드경제 / 광진업	보도이유 취하	2012국선63	390
모든 언론사 / 박석삼	각 하	2012국선5	382	